

글로벌교육센터운영규정

6-1-9

규정번호	6-1-9
제정일자	2018.12.10
최근개정	2026.7.20
개정차수	4차 개정
관리부서	글로벌교육 팀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글로벌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센터는 우리대학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및 다양한 국제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외국 자매결연대학과의 상호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한다.(개정 2019.06.17.)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5.09.29.)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,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5.9.29.)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(신설 2025.9.29.)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육국제화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
2.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관리
3. 외국 대학·기관·단체 교류 협력
4. 외국 대학과 교환학생 상호 파견(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포함)
5.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
6.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편·입학 지원
7. 해외인턴 및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
8. 글로벌현장학습(해외현장실습) 국고지원사업 운영
9. 재학생 외국어교육 지원
10. 국제교류 연계기관 교직원 해외연수·파견 및 교류
11. 국제교류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운영
12. 기타 국제화 사업에 관한 사항

[본조개정 2026.7.20.]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19.06.17.,2025.9.29.)

1. 글로벌교육센터의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6-1-9 글로벌교육센터운영규정

2. 글로벌교육센터의 운영 및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5.9.29.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(개정 2019.06.17.,2024.7.24.,2025.9.29.)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글로벌교육센터 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19.06.17.)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(자문위원회 구성) <삭제(2025.9.29.)>

제 7 조(자문위원의 역할) <삭제(2025.9.29.)>

제 8 조(세부운영) 글로벌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3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)